

## 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글로벌월배당ETF혼합자산투자신탁(H)[재간접형]

나. 변경시행일 : 2024년 9월 12일(목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신탁계약서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
- 1) 환매대금 지급일 단축
- 2) 가입자격 변경(Class S, S-P)
- 3)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변경  
-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허필현 → 손동환)
- 4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- 5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4.03.01. 시행)
- 6)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4.01.26. 시행)

### [신탁계약서]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b></p> <p>① ~ 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&lt;생략&gt;</p> <p>12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</u></p> <p>13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 <p>④ ~ ⑤ &lt;생략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b></p> <p>① ~ 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12. Class S 수익증권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 <p>13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 및 「소득세법시행령」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 <p>④ ~ ⑤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&lt;생략&gt;</b></p> <p>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7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</u></p>	<p><b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b></p> <p>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5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</u></p>

<p>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~ ④ &lt;생략&gt;</p>	<p>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28조(환매연기) ① ~ ⑥ &lt;생략&gt;</b>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5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&lt;생략&gt;</p>	<p><b>제28조(환매연기) ① ~ ⑥ &lt;현행과 같음&gt;</b>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4영업일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
[(간이)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투자결정시 유의사항</b>			
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<신설>	14.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 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b>요약정보</b>			
상단 표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이며,--(이하 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이며,--(이하 생략)
투자비용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
	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	허필현	손동환
투자자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	·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·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환매방법	환매대금 지급일 단축	- 17시 이전 :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<u>7영업일</u> 에 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 : 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<u>8영업일</u> 에 대금 지급	- 17시 이전 :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<u>5영업일</u> 에 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 : 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<u>6영업일</u> 에 대금 지급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집합투자기구 연혁 신설	<신 설>	1) 환매대금 지급일 단축 2) 가입자격 변경(Class S, S-P) 3)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변경 -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(허필현 → 손동환) 4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5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4.03.01. 시행) 6)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(2024.01.26. 시행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	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	허필현	손동환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온라인 슈퍼(S)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	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</u>

			자기구입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. 위험관리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포트폴리오 구성현황(예시)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(2) 환헤지 비용 환헤지 비율: - 환헤지 비용: -	(2) 환헤지 비용 환헤지 비율: 99.540338% 환헤지 비용: 544,800원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.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/u> 따라서 ....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</u>	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<u>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/u> 따라서 ....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	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....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....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	가. 일반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설정 3년 경과 투자위험등급 기준 : <u>표준편차</u>
라.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나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	Class S 가입자격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</u>	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
	Class S-P 가입자격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</u>	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</u>

		<p>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	<p>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 및 「소득세법시행령」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p>
<p>나. 환매 (2)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	<p>환매대금 지급일 단축</p>	<p>① 17시 (오후 5시)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D+3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(D+6)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 (오후 5시)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(D+4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(D+7)에 환매금액 지급</p>	<p>① 17시 (오후 5시)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D+3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(D+4)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 (오후 5시)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(D+4)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(D+5)에 환매금액 지급</p>
<p>(7) 수익증권 환매제한</p>	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5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4영업일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
<p>(8) 수익증권 환매연기</p>		<p>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</p>	<p>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</p>

		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5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)</u>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3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4영업일전일)</u>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(10)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-	중도환매 불가 : x 중도환매 허용 : o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: x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“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개정세법 반영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분리과세 한도 <u>1,200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). 다만 <u>1,200만원</u>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.5% 분리과세 선택 가능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분리과세 한도 <u>1,500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). 다만 <u>1,500만원</u>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.5% 분리과세 선택 가능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 기준)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<b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
<끝>.